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에 따라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이동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
-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19. 5. 7. ~ 5. 13.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gowoon@korea.kr

2) 주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3) 팩스 : 061-749-477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원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974호
----------	--------

발의연월일 : 2019. 5. 3.

발 의 자 : 박재원 의원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명확히 규정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규정
(3인이상 5인이하 → 5명)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 조정 (100천원 → 200천원)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인 이상 5인 이하로” 를 “5명으로” 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 분	액 수
일 비	200,000원
여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2의 규정에 따른 부시장 상당액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순천시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u>3인이상 5인이하로</u> 하되, 의원은 위원회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위원의 정수) ----- ----- ----- <u>5명으로</u> ----- -----.	
〔별표〕		〔별표〕	
구분	액수	구분	액수
일비	<u>100,000원</u>	일비	<u>200,000원</u>
여비	<u>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 지급구분표상의 제2호 적용.</u> ○ 일비 : <u>20,000원</u> ○ 식비 : <u>25,000원</u> ○ 숙박비 : <u>46,000원</u>	여비	<u>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부시장 상당액</u>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일부개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19. 3. 12] [법률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83조(감사위원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순천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8. 16.]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916호, 2018. 8.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및 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정수, 선임방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위원회 정수) 위원회의 정수는 순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1995.09.20>

②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회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1995.09.20>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7.06.15>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7.06.15, 2018.2.5>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8.08.16>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6.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을 제출할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위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7.06.15>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5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

1. 개정이유

-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정 임무 수행하기 위한 위촉 시 임기 조정 조항 삽입
- 명예홍보대사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정기회의 개최 및 의회 활동사항 보고 조항’ 삭제
- 홍보대사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업무 총괄부서, 운영부서 지정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3. 15. ~ 4. 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3. 11.(여성가족과-486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3. 4.(기획예산실-261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3. 15.(순천시 공고 제2019-533호)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5조제1항 중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를 “홍보대사에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홍보대사의 위촉 및 관리는 홍보실에서 총괄하고 운영은 홍보실과 협의하여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총괄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촉) ① ~ ② (생략)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제3조(위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u>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u>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u>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 사항을 1년에 1차례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제5조(운영) ① ----- ----- <u>홍보대사에게</u> ----- ----- ----- ----- ② <u>홍보대사의 위촉 및 관리는 홍보실에서 총괄하고 운영은 홍보실과 협의하여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운영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총괄한다</u>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52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

1. 개정이유

-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
 - (복지인력) 읍면동 사회복지·방문간호·마을자치 인력
 - (생활안전 등) 지역현안해결·주민서비스 제고 등 역점사업 인력

2. 주요내용

- (총 정원) 1,461명 → 1,478명 / * 17명 증 (단위 : 명)

구분	현행	개정	증감 내역			비고
			계	증원	감원	
총계	1,461	1,478	17	17	0	
정무직	1	1	-	-	-	
일반직	1,423	1,440	17	17	-	6급 이하 17
별정직	1	1	-	-	-	
연구직	7	7	-	-	-	
지도직	29	29	-	-	-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4. 15. ~ 4. 2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4. 16.(여성가족과-805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4. 12.(기획예산실-461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4. 15.(순천시 공고 제2019-766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461명”을 “1,47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36명”을 “1,453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1,478	1,478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440	1,440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77	31	3	6	13	24
6급이하 계	1,351	1,351				
별정직 계	1	1				
6급상당이하 계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연구사	7	7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461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u>1,436명</u> 2. (생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u>1,478명</u> ----- 1. ----- : <u>1,453명</u> 2. (현행과 같음)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u>1,461</u>	<u>1,461</u>					총 계	<u>1,478</u>	<u>1,478</u>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u>1,423</u>	<u>1,423</u>					일반직 계	<u>1,440</u>	<u>1,440</u>				
3급	1	1					3급	1	1				
4급	11	5	1	2	3		4급	11	5	1	2	3	
5급	77	31	3	6	13	24	5급	77	31	3	6	13	24
6급 이하 계	<u>1,334</u>	<u>1,334</u>					6급 이하 계	<u>1,351</u>	<u>1,351</u>				
별정직 계	1	1					별정직 계	1	1				
6급 상당 이하 계	1	1					6급 상당 이하 계	1	1				
연구직 계	7	7					연구직 계	7	7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7	7					연구사	7	7				
지도직 계	29	29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지도사	27	2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기구 : 변동없음

○ 정원 증감내역

(단위 : 명)

합 계	일반직			비 고
	4급	5급	6급 이하	
17	-	-	17	

2. 비용 소요내역

○ 소요비용 증감내역

(단위 : 원)

구 분		1인당 소요비용		증감인원	총 액	비 고
일반직	6급	86,475,500	평균 60,601,165	17명	1,030,219,805	26호봉
	7급	69,911,750				17호봉
	8급	47,815,280				7호봉
	9급	38,202,130				4호봉

○ 직급별 단가내역

(단위 : 원)

구분	6급 (26호봉)	7급 (17호봉)	8급 (7호봉)	9급 (4호봉)	비고
총계(①+②+③)	86,475,500	69,911,750	47,815,280	38,202,130	
①인건비(A+B)	63,257,860	50,821,830	34,388,480	26,914,650	
·기본급(A)	48,268,800	38,317,200	25,692,000	20,422,800	
·수당(B)	14,989,060	12,504,630	8,696,480	6,491,850	
-정액급식비	1,560,000	1,560,000	1,560,000	1,560,000	
-명절휴가비	4,826,880	3,831,960	2,569,200	2,042,280	
-연가보상비	1,383,700	1,098,490	736,500	585,450	
-정근수당	4,022,400	3,193,100	1,498,700	680,760	
-정근수당가산금	1,200,000	960,000	600,000		
-시간외수당(정액분)	1,396,080	1,261,080	1,132,080	1,023,360	
-기타수당(대민활동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②직급보조비	1,980,000	1,860,000	1,740,000	1,740,000	
③이전경비	21,237,640	17,229,920	11,686,800	9,547,480	
-성과상여금	3,679,000	3,128,000	2,598,000	2,209,000	
-연금부담금	12,634,080	10,070,160	6,704,400	5,239,920	
-국민건강보험금	4,538,400	3,715,680	2,197,440	1,934,160	
-장기요양보험금	386,160	316,080	186,960	164,400	

3. 협의사항 : 해당없음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 성 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정영고(☎ 749-5457)

총무과 인사팀장

신순옥(☎ 749-563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53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

1. 개정이유

-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이·통·반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

2. 주요내용

- 4개 통, 16개 반 신설
 - [별표 2] 삼산동 순천의봄 아파트 : 40통(5반), 41통(5반) 신설
 - [별표 2] 왕조1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 70통(3반), 71통(3반) 신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연간 13,920천원(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3. 15. ~ 4. 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3. 18.(여성가족과-542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3. 12.(자치혁신과-3267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3. 14.(기획예산실-316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3. 15.(순천시 공고 제2019-544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삼산동 39통 다음에 40통 1반(101동), 2반(102동), 3반(103동), 4반(109동, 110동), 5반(111동), 41통 1반(104동, 상가동), 2반(105동), 3반(106동), 4반(107동), 5반(108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삼산동	⋮	⋮	⋮
	40통	1	용당동 순천의봄아파트 101동
		2	102동
		3	103동
		4	109동, 110동
		5	111동
	41통	1	용당동 순천의봄아파트 104동, 상가동
		2	105동
		3	106동
		4	107동
		5	108동

별표 2 중 왕조1동 69통 다음에 70통 1반(101동, 상가동), 2반(102동), 3반(103동), 71통 1반(104동, 2반(105동), 3반(106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 왕조1동	⋮	⋮	⋮
	70	1	조례동 영무예다음아파트 101동, 상가동
		2	102동
		3	103동
	71	1	조례동 영무예다음아파트 104동
		2	105동
		3	106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2]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삼 산 동	39	4	가곡동 구획정리지구 15블럭 9롯트 양우내안애아파트 104동 104~2004, 105~2005, 106~2006
			<신 설>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왕 조 1 동	69	5	111동
			<신 설>
⋮			

개정안

[별표 2]

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삼 산 동	(현행과 같음)	⋮	⋮
		40	1 2 3 4 5 용당동 순천의봄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9동, 110동 111동
	(현행과 같음)	41	1 2 3 4 5 용당동 순천의봄아파트 104동, 상가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
왕 조 1 동	(현행과 같음)	⋮	⋮
		70	1 2 3 조례동 영무예다음아파트 101동, 상가동 102동 103동
	(현행과 같음)	71	1 2 3 조례동 영무예다음아파트 104동 105동 106동
		⋮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54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 반영
- 사회약자 배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감면 기한 연장
- 운영 현실에 맞게 조문 보완하여 감면 사항 명확화

2. 주요내용

- 2019. 7월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21. 12. 31.까지 현행 수준 유지(안 제2조)
- 종교법인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등 변경(안 제3조)
- 감면 일몰기한 경과 조항의 감면기간 3년 연장(2021. 12. 31.까지)
 -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안 제4조),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안 제5조), 농공단지(안 제7조)
- 감면특례제한(최소납부세제) 제외대상 명확히 규정(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장애인복지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4. 1. ~ 4. 22.)결과
 - 법제처 의견 : 부칙 시행일 규정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일과 일치시키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칙 조항 삭제 권고 (전라남도 세정과-4935, 2019.4.24)

관련 조항	주요내용	검토결과
부칙 제1조 (시행일)	•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2019. 7. 1.시행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2019. 7. 1.로 수정할 필요 있음. ⇒ 다만, 2019. 7. 1.로 시행일을 수정하는 경우 2019. 1. 1.부터 2019. 6. 30. 기간 중 감면 공백이 발생하여 특례 규정 신설 필요	<u>〈수용 및 보완 조문 신설〉</u>
부칙 제3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 조례 감면 시 ‘3년의 기간 내’ 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감면기간 만료일(2021.12.31.) 이전에 취득한 자동차세 대하여 영구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u>〈수용〉</u>

《수용에 따른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1년 12월 31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u>2019년 7월 1일부터</u> 시행한다. 〈삭 제〉 <u>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u>

개 정 안	수 정 안
	<u>규정(순천시 조례 제1874호로 공포·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장애인</u> <u>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u>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3. 29.(여성가족과-653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3. 29.(기획예산실-394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4. 1.(순천시 공고 제2019-669호)
- 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필 : 2019. 4. 16.(세정과-8382호)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고 한다]”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2조제2항 중 “대체취득(제1항”을 “대체취득[제1항”으로, “이전등록하고”를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로, “포함한다)하는”을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경감하는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7조 중 “2018년 12월 31일” 을 “2021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을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 및 다음”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순천시 조례 제1874호로 공포·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장애인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었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고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이 ----- ----- ----- ----- ----- ----- ----- ----- ----- -----		

현행	개정안
다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u>2018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u><신 설></u> <u><신 설></u> ② 장애인이 <u>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u>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u>포함한다)</u>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	----- ----- ----- ----- 2021년 12월 31일-----. 1. <u>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u> 2. <u>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u> ② ----- <u>대체취득[제1항-----</u> ----- ----- <u>이전등록</u> <u>(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u> ----- ----- ----- ----- ----- <u>포함한다]하는</u> ----- ----- -----. <u><삭 제></u>

현행	개정안
<u>차세를 면제한다.</u>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서 "<u>조례로 정하는 율</u>"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	③ 제1항 및 제2항----- ----- ----- ----- ----- ----- --.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경감하는 "<u>조례로 정하는 율</u>"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	개정안
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u>2018년 12월 31일까지</u> 면제한다. ② (생략)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u>2018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 ----- ----- <u>2021년 12월 31일</u>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 ----- ----- ----- <u>2021년 12월 31일</u>-----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현행	개정안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u>2018년 12월 31일까지</u>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u>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 ----- ----- ----- ----- ----- <u>2021년 12월 31일</u> ----- ----- ----- ----- ----- -----. 제1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 ----- ----- ----- ----- ----- ----- -----. <u>「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 및</u> <u>다음</u> -----. 1. 2. (현행과 같음)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55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

1. 개정이유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지급명령에 의한 지급’ 조문 변경(안 제7조제2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회계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3. 15. ~ 4. 4.)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2. 28.(여성가족과-407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2. 16.(기획예산실-195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3. 12.(순천시 공고 제2019-529호)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지급) ① (생략)	제7조(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급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 ----- ----- -----.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2956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

1. 개정이유

- 2018년 개관 운영 중인 순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
- 기존 청소년시설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의 정의와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제1조~제4조
- 청소년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이용자, 이용료, 손해배상) : 제5조~제12조
- 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 등) : 제13조~제19조
- 다른 조례의 폐지
 -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4. 1. ~ 4.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4. 8.(여성가족과-714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3. 29.(기획예산실-400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4. 1.(순천시 공고 제2019-683호)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시설”이라 (이하 “시설”이라 한다.) 함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시설 사용료와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및 재료비, 수련활동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기능) ①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2장 시설의 이용

제5조(이용자 범위) ① 시설은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 단체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1:00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이용료)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비 및 숙박료를 제외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 가. 국가,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가 주관 및 주최하는 청소년행사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청소년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 라. 「사회복지 사업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의 청소년
- 마.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사.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 아.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 감면

-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나.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설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 사용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시설의 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청소년시설을 관리위탁 받을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순천시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3명

2. 청소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청소년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③ 심의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청소년시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다.
-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7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7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시의 사전승인 없이 시행한 경우
 4.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시장과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고·시정명령·이행명령·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이미 체결된 위·수탁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별표 1]

청소년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4조 관련)

명칭	위치	비고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순천시 금곡길 20 (행동)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167	
순천시 청소년야영장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170	
순천시 유스호스텔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167	
순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순천시 명말1길 57 (연향동)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순천시 명말1길 57 (연향동) 3층	
순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순천시 명말1길 57 (연향동) 3층	
순천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순천시 중앙3길 6-6 (장천동)	

순천시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 (제4조 관련)

시설구분	사업 및 기능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운영 계획의 수립 및 관리·운영 ○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 청소년 자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운영사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과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순천시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연수 및 상담 ○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각종 수련 거리 개발·운영·보급 등에 관한사업 ○ 숙식편의 및 단체 수련활동 제공 ○ 그 밖에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사업
순천시 유스호스텔	○ 여행청소년의 숙박편의 제공 및 수련활동 지원
순천시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만남의 장소, 쉼터 공간 및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공간 제공 ○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그 밖에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순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사업 ○ 1388청소년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순천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순천시 청소년시설의 사업 및 기능 (제4조 관련)

시설구분	사업 및 기능
순천시청소년 성문화센터	○ 청소년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교육

[별표3]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제8조와 관련)

1. 시설사용료(단체편의시설)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참 고
		평 일	토·일요일	
소 극 장	주간 2시간	30,000원	4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
	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1일	90,000원	10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영 화 관	주간 2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2시간	70,000원	80,000원	
	1일	150,000원	16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야외공연무대	주간 3시간	50,000원	60,000원	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원
	야간 3시간	70,000원	80,000원	
	1일	110,000원	120,000원	야간요금별도징수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참 고
		청소년	일 반	
체력단련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 료	월 10,000원	
댄스연습실	2 시 간 (기본사용시간)	무 료	평 일 20,000원 토,일휴일 30,000원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5,000원
창 극 실 동아리실 어울림실	2 시 간 (기본사용시간)	무 료	평 일 15,000원 토,일휴일 20,000원	기본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5,000원

※ 주간 09:00~18:00, 야간 18:00~21:00

2. 부대시설 사용료(기본 사용시간 요금)

○ 영 화 관

·특수조명 : 20,000원 ·음향 : 20,000원 ·냉·난방 : 50,000원

○ 소 극 장

·비디오프로젝트 : 20,000원 ·음향 : 10,000원 ·냉·난방 : 20,000원

○ 댄스연습실 ○ 창극실 ○ 어울림실 ○ 동아리실

·냉·난방 : 10,000원

○ 야외공연무대

·조명 : 20,000원 ·음향 : 10,000원 ·냉·난방 : 5,000원

※ 추가조명 설치 사용시 시간당 10,000원 추가

○ 마이크 기본(2개) : 5,000원 · 1개 추가 : 3,000원

※ 기본시간은 2시간(야외공연무대는 3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초과시 기준금액의 20% 매시간 가산

3. 교육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취미·교양	1개월	·청소년 : 무료 ·성 인 : 10,000 ~ 15,000	○ 재료비 별도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요금

(단위 : 원)

시 설 별			단 위	금 액	비 고
숙박동	일 대 학 반 생	4인실	1실/1박	40,000	○ 1명 추가 8,000원 추가
	중고생	5인실	"	40,000	○ 1명 추가 5,000원 추가
	초등학생	5인실	"	30,000	○ 1명 추가 4,000원 추가
식 비	일 반 (대 학 생)		1식당	7,000	
	중 고 생		"	5,500	
	초 등 학 생		"	4,500	
야영장	일 반		1인/1박	5,000	◦ 당일 비숙박이라도 1박으로 본다
	대 학 생		"	4,000	
	중 고 생		"	3,000	
	초 등 학 생 이 하		"	2,000	
소 강 당	평 일		1회 2시간	4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할 경우 시간당 10,000원 추가
	주 말 · 공 휴 일		"	6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할 경우 시간당 15,000원 추가
강 당	평 일		1회 2시간	6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할 경우 시간당 15,000원 추가
	주 말 · 공 휴 일		"	8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할 경우 시간당 20,000원 추가
다 목 적 실내강당	평 일		"	8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할 경우 시간당 20,000원 추가
	주 말 · 공 휴 일		"	100,000	◦ 기본사용시간 초과할 경우 시간당 25,000원 추가
물놀이장	일 반 (대 학 생)		1회/1인	5,000	
	중 고 생		"	4,000	
	초 등 학 생 이 하		"	3,000	
방난방비	소 강 당 · 강 의 실		시간당	15,000	
	강 당 · 다 목 적 대 강 당		"	20,000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요금

(단위 : 원)

시 설 별		단 위	금 액	비고
운 동 장	평 일	회당	150,000	
	주 말 · 공 휴 일	회당	200,000	
인 라 인 스 케 이 트 장	일 반	1인 시간당	5,000	
	중 고 생	"	2,000	
	초 등 학 생 이 하	"	1,000	
인 공 압 벽	일 반	1인 시간당	5,000	수련원 프로그램 위탁할 경우 사용가능
	중 고 생	"	3,000	
	초 등 학 생 이 하	"	2,000	
도 예 체 험	일 반	1인 회당	5,000	
	중 고 생	"	4,000	
	초 등 학 생 이 하	"	3,000	
모 험 시 설	일 반	1인 회당	3,000	수련원 프로그램 위탁할 경우 사용가능
	중 고 생	"	1,500	
	초 등 학 생	"	1,000	
비 즈 공 예	일 반	1인 회당	5,000	
	중 고 생	"	3,000	
	초 등 학 생	"	2,000	

※ 익일 12:00 초과 시 1일(1박)로 처리

순천시 유스호스텔 사용요금

(단위 : 원)

구 분		청 소 년		일반인(대학생)	비 고
		초등학생	중고생		
숙박료 (1인 1박)		6,000	8,000	10,000	
식 대 (1인 식)		4,500	5,500	7,000	특식주문가능
강 당 강의실 사용료	평일	2시간 이하 50,000 2시간 초과 시간당 20,000			
	주말	2시간 이하 60,000 2시간 초과 시간당 25,000			
1. 20인 이상 단체는 숙박료에 한정하여 10퍼센트 감면 2. 1박은 당일 12:00 ~ 다음날 12:00까지(단. 이용시간 초과할 경우 1박 추가) 3. 한국 유스호스텔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이용요금에서 10퍼센트 감면 (단, 식대는 제외) 4. 사용료 냉난방비 포함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계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975호
----------	--------

○ 발의연월일 : 2019. 5. 3.

○ 발 의 자 : 박계수 의원

1. 제정이유

-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에게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수립 등의 책무를 부여함 (안 제3조)
-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4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곤충 산업과 관련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 사업,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 ~ 제7조)
- 곤충산업 관련 단체 육성사업 추진 및 육성사업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등), 제 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곤충산업)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곤충의 범위)

5. 예산상황 : 해당 없음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뽕명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사업
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6.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
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

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반조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역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생태연구소, 박물관·전시관,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곤충농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사육,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과 시설의 설치
2. 곤충 생산·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
3.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4.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
5. 토착 곤충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 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6., 2016. 2. 11.>

1. 곤충의 사육업·가공업·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가공업·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 조성업·운영업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곤충의 범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2.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5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

1. 개정이유

-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원활한 회의운영 및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체계 보완

2. 주요내용

- 제5조 제목(개정) (“분과위원회” ⇨ “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 (개정) 제①항 “사안별 분과위원회” ⇨ “운영협의회와 사안별 분과위원회”
 - (신설) 제②항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 (개정) 제③항 “제②항” ⇨ “제③항”
 - (개정) 제④항 “제③항” ⇨ “제④항” “분과위원회” ⇨ “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 (신설) 제⑤항 운영협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협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4. 1. ~ 4. 22.)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4. 2.(여성가족과-6678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3. 23.(기획예산실-3893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4. 1.(순천시 공고 제2019-682호)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분과위원회”를 “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안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협의회와 사안별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제4항(현행 제3항) 중 “분과위원회”를 “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로 하며, 제2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⑤ 운영협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협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사안별로 분과위원회를</u> 둘 수 있다. <신설> ② (생략) ③ <u>분과위원회</u>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신설>	제5조(<u>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u>) ① ----- ----- <u>운영협의회와 사안별 분과위원회</u> ----- ② <u>운영협의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u>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u> ----- ----- ⑤ <u>운영협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협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u>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갑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2973호
----------	--------

발의연월일 : 2019. 5. 3

발 의 자 : 유영갑 의원

1. 개정이유

-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풍력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풍력발전 시설 가동에 따른 저주파, 소음 피해 등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풍력 발전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풍력 발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 (현행) 도로 및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 및 축사로부터 이격거리 1,000m 이상
 - ⇒ (개정)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이격거리 2,000m 이상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 ② (생략) ③ <u>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u> 1. <u>도로 및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u> <u>으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 2. <u>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 및 축사</u> <u>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u> ④ ~ ⑦ (생략)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④ ~ ⑦ (현행과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 2019. 2. 22] [법률 제15401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16., 2017. 4. 18.>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3. 7. 16.]

[시행일:2012. 7. 1.] 제5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29호, 2019. 3. 19, 일부개정]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4.>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법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6. 3. 23., 2008. 2. 29., 2009. 7. 7., 2009. 8. 5., 2010. 4. 29., 2012. 1. 2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의 개발행위 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 복원사업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 ④ 삭제 <2011. 3. 9.>
- ⑤ 삭제 <2011. 3. 9.>
- ⑥ 삭제 <2011. 3. 9.>
- ⑦ 삭제 <2011. 3. 9.>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9. 4. 18.]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995호, 2019. 4. 18.,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0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3.04.01>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도시자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11.17, 2013.04.01, 2013.06.1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09.29]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04.01, 2017.12.29>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단위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09.28>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 처리) 시장은 영 제25조제4항제1호 내지 제13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09.09.28, 2019.04.18>[제목개정 2008.11.17]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공원사용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3.04.01>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동구 설치 시 정한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04.01>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 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구 설치시 따로 정한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3.04.01>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1.17, 2013.04.01>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09.28, 2011.09.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1.09.30>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11.09.3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09.09.28, 2013.04.01>

1.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08.11.17>
 2.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3.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제목개정 2013.04.01]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7, 2009.09.28, 2011.09.30, 2013.04.01, 2015.10.01, 2016.07.15>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20톤 이하, 전체부피 4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톤 이하, 전체부피 2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09.28>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의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4.01, 2019.04.18>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5천제곱미터 미만

제19조의2(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 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4.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 창고 (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본조신설 2011.09.30]

제19조의3(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 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본조신설 2011.09.30]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0.23, 2014.07.31, 2015.10.01, 2016.07.15, 2017.09.29>

1.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의 순천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입목축적의 조사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다.
2. 경사도가 22도 미만인 토지, 다만 토석채취의 경사도는 30도 미만인 토지, 경사도의 측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3. <삭제 2017.12.29>

②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7.31>

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발전시설 허가 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사이의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3.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말한다.
4. “거리”는 직선거리로서 시·종점은 해당 시설 등의 지적경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경우 도시계획선 기준으로 하고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사업부지 경계로 한다.

②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가.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나. 5호 이상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③ 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 및 축사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④ 4호 이하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피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 및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발전시설은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차폐식수 및 차폐막을 하도록 권고한다.
- ⑦ 제20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경사도는 15도 미만인 토지로 한다.[본조신설 2019.04.18]

제21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09.28, 2011.09.30, 2013.04.0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30, 2013.04.0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폐불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 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09.30>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분할제한 면적은 「순천시 건축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8에 적합할 것[전문개정 2014.07.31]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7, 2011.09.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18조 조건부 허가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 <삭제 2017.12.26>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09.28>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04.01>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②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29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 : 0.3

2. 상업지역 : 0.1

3. 공업지역 : 0.2

4. 녹지지역 : 0.4

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신설 2017.12.29>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제17816호, 2002.12.26>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1.09, 2014.07.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11.17, 2015.10.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11.17, 2015.10.01, 2019.04.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제목개정 2019.04.18]

제33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11.17, 2015.10.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검사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제34조 <삭제 2019.04.18>

제35조 <삭제 2015.10.01>

제36조 <삭제 2016.02.22>

제37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처마기준으로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은 12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20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7, 2011.09.30, 2015.10.01, 2016.02.22, 2019.04.18>

제38조(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7>

제39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경관 및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 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천시 경관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4.01, 20106.02.22>

제40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11.17, 2015.10.01, 2017.09.29, 2019.04.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 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04.18>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제목개정 2019.04.18]

제41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7, 2009.09.28, 2013.04.01>

1. 허가권자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블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3.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제목개정 2019.04.18]

제42조 <삭제 2011.12.30>

제43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수 있다. <개정 2019.04.18>

제44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04.18>

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04.18>

제45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11.17, 2015.10.0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제4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7, 2019.04.18>

② 영 제7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7, 2019.04.18>

③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계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0, 2013.06.14, 2017.10.30, 2019.04.18>

1. 공공시설 중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관광기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공장은 제외한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태계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 2017.12.29>[제목개정 2019.04.18]

제47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11.17, 2009.09.28, 2015.10.01, 2019.04.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9.04.18]

제48조 <삭제 2019.04.18>

제49조 <삭제 2015.10.01>

제50조 <삭제 2015.10.01>

제51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제52조 <삭제 2015.10.01>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1.17, 2010.06.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건폐율로 한다. <신설 2008.11.17, 개정 2011.06.15>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1.09, 2009.09.28, 2013.04.01, 2014.07.31, 2016.07.15>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56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09.28, 2014.07.31>

제56조의2(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7.15>[본조신설 2014.07.31][중전 제56조2는 제56조3으로 이동 <2014.07.31>]

제56조의3(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 4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5.10.01, 2016.07.15>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7.15>[본조신설 2009.09.28] [제

56조의2에서 이동 <2014.07.31>]

제56조의4(전통사찰 및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7.15>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본조신설 2014.07.31]

제56조의5(학교의 건폐율 완화)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6.07.15]

제57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09.30, 2014.07.31, 2015.10.01, 2016.07.15>

-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07.31, 개정 2016.07.15>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제목개정 2014.07.31]

제57조의2(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07.31, 2016.07.15>[본조신설 2009.09.28]

제57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18년 12월 31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09.29>

- ②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

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09.29>[전문개정 2016.07.15]

제57조의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16.07.15]

제58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04.06.18, 2010.06.30, 2014.07.31, 2015.10.01, 2017.09.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5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7.31>

③ <삭제 2011.09.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

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 한다. <신설 2008.11.17, 개정 2014.07.31, 2016.07.15>

- ⑤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구역중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영향이 없다고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08.11.17, 개정 2011.06.15, 2013.04.01, 2014.07.31>

1.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가 특화경관지구로 편입되고 발생한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용적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8.11.17, 개정 2014.07.31, 2019.04.18>

1.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2.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07.31>

- ⑧ 영 제85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7, 2009.09.28, 2013.04.01, 2014.07.31>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다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09.09.28,

2014.07.3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14.07.31>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 + 0.3\alpha) / (1 - \alpha)] \times (\text{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 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7.31>

제61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7.31] <개정 2015.10.01>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2조(기능) 순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15, 2017.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09.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02.24, 2007.01.09, 2008.11.17, 2011.09.30, 2017.12.29, 2019.04.18>

1. 순천시의회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4.01>

제6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한 경우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7.12.29]

제6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1.09.30>

④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부결, 재심의, 분과위원회 위임의결로 한다. <개정 2019.04.18>

⑤ 제1항에 따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1.09.30>

- ⑥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총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0.01>
- ⑦ 위원회 심의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출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성원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어 처리기간 내 심의가 어려울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6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계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계획분과위원회

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개발분과위원회

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나.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불허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의2(공동위원회) ① 공동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순천시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하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분의 2 미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7.15>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4.07.31]

제6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0.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8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② 영 제1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의 공개는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11.17> <개정 2011.09.30>

제71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7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삭제 2017.12.29>

④ <삭제 2017.12.29>

⑤ <삭제 2017.12.29>

제7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되,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조문개정 2017.12.29]

제74조(임용 및 복무 등)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조문개정 2017.12.29]

제75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76조 <삭제 2017.12.29>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2957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

1. 제정이유

-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시민주도형 안전문화 확산 등 시민과 함께 안전관리 및 재난을 예방하여 더 편안한 국제안전도시 순천을 완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문화대상 정의: 안 제2조
 -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안전문화대상 수여
- 시상부문 등: 안 제3조
 - 시상규모는 개인부문 3명, 단체부문 3개 이내로 한다.
- 시상 시기 등: 안 제4조
 - 안전문화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해당연도 12월로 함
- 위원회 구성 등: 안 제5조
 - 안전문화대상 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 수상신청 및 신청자격 등: 안 제9조
 - 안전문화대상을 신청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접수마감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사무소)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활동하고 있어야 함.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별첨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결과(2019. 3. 15 ~ 4. 3.):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예산부서 심의필: 2019. 3. 5.(안전총괄과-3653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3. 25.(여성가족과-6054호)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19. 3. 8.(전략기획과-5889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19. 3. 15.(순천시 공고 제2019-522호)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1항에 따라 순천시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순천시 안전문화대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문화대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순천시 안전문화대상(이하 “안전문화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시상 부문 등) ① 안전문화대상은 개인 및 단체부문으로 구분한다.

② 시상 규모는 개인부문 3명, 단체부문 3개 이내로 하고 세부사항은 제5조의 안전문화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③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중복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상 시기 등) ① 안전문화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해당 연도 12월로 한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안전문화대상 시행 요강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안전문화대상 수상후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안전문화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별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난안전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교수, 전문가 또는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해당 연도의 안전문화대상 수상후보자 선정이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상신청 및 신청자격 등) ① 안전문화대상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관할지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문화대상을 신청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 : 접수마감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2. 단체 : 접수마감일 현재 순천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활동하고 있을 것(법인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위원회에 수상후보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 등) ① 시장은 후보가 제출한 공적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후보 선정) 위원회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개인 및 단체의 공적을 심사하여 수상후보를 선정한다.

제12조(수상대상 결정 및 시상) ① 수상대상은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후보 중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안전문화대상의 시상은 시장이 한다.

제13조(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 및 단체에게는 정부포상 후보 추천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58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

1. 개정이유

- 주차장법 개정에 맞춰 필수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대상자에 주민협의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단체’를 ‘비영리단체’로 완화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및 조례개정 권고사항 반영(안 제10조의4, 제16조의3, 제19조의2)

-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사항 명시
-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 지정기준 명시
- 노외 및 부설주차장 과징금 처분을 위한 추진절차 명시

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 완화(안 제3조)

- 위탁계약 대상자 중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를 ‘비영리 단체’로 완화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주차장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3. 15. ~ 4. 4.) 결과 : 의견없음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3. 11.(여성가족과-487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3. 5.(기획예산실-268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3. 15.(순천시 공고 제2019-515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 본문 중 “법”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민협의체 등 인근 주민자생단체 중 비영리 단체

제10조의4, 제16조의3,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 및 법 제17조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유료운영 시설로 감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2. 관리인이 상주하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시간 측정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제16조의3(주차장의 설치제한)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설치제한의 기준 등을 시보에 고시한다.

제19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u>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u> 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 --- <u>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u>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가 없을 경우 주민협의회 등 인근 주민자생단체 중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u>	4. <u>주민협의회 등 인근 주민자생단체 중 비영리단체</u>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0조의4(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u>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 및 법 제17조에 따라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u>
	② <u>공영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u>
	1. <u>유료운영 시설로 감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u>
	2. <u>관리인이 상주하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시간 측정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u>

< 신 설 >

제16조의3(주차장의 설치제한) 법 제19조 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설치제한의 기준 등을 시보에 고시한다.

< 신 설 >

제19조의2(과징금 처분)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60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

1. 개정이유

-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운영방식 변경 결정에 따른 운영일, 강좌개설,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일·토요일(09:00~18:00) 운영, 공휴일 휴무
- 업사이클 프로그램 강좌 개설 근거 마련
- 업사이클센터 이용자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수정(국장→국·소장)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소요예산 : 비용추계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9. 3. 15. ~ 4. 4.)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3. 18.(여성가족과-542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9. 3. 5.(청소자원과-6373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9. 3. 11.(기획예산실-296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9. 3. 15.(순천시 공고 제2019-525호)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09:00 ~ 18:00

2. 토요일 : 09:00 ~ 18:00

②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9조제1항(현행 제8조제1항) 중 “매년 부과·징수한다”를 “부과·징수하며 센터 내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현행 제8조제3항) 중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강좌운영) ① 시장은 업사이클 분야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모집·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현행 제21조제1항) 중 “1명과”를 “1명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현행 제21조제3항) 중 “국장”을 “국·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현행 제21조 제5항) 중 “국장”을 “국·소장”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

(제8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 분	1회 기준	사용시간	대관료	비 고
다목적실 · 교육장	오전	09:00 ~ 12:00	50,000	
	오후	14:00 ~ 17:00	50,000	
전시실	1일	09:00 ~ 18:00	50,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09:00 ~ 18:00 2. 토요일 : 09:00 ~ 18:00 ②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휴일 2.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 ~ 제7조 (생략)	제5조 ~ 제8조 (현행 제4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8조(사용료) ①시장은 센터내 시설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를 매년 부과·징수한다.	제9조(사용료) ① ----- ----- -- 부과·징수하며 센터내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 ~ 제13조 (생략)	제10조 ~ 제14조 (현행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u><신 설></u>	제15조 ① 시장은 업사이클 분야의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모집·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현행	개정안																			
제14조 ~ 제20조 (생략)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장은 업사이클링등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생략) 1. ~ 3. (생략) ⑤ 당연직 위원은 업사이클링등 업무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제22조 ~ 제26조 (생략) <신설>	<u>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u>④ 시장은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u> 제16조 ~ 제22조 (현행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23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하여 -----. ② (현행과 같음) ③ ----- 국소장이 -----. ④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⑤ ----- 국소장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 ~ 제28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별표 1] <u>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용료 등</u> (제8조제1항 관련) (단위:원) <table><tr><th>구분</th><th>1회 기준</th><th>사용 시간</th><th>대관료</th><th>비고</th></tr><tr><td rowspan="2">다목적실 교육장</td><td>오전</td><td>09:00 ~ 12:00</td><td>50,000</td><td></td></tr><tr><td>오후</td><td>14:00 ~ 17:00</td><td>50,000</td><td></td></tr><tr><td>전시실</td><td>1일</td><td>09:00 ~ 18:00</td><td>50,000</td><td></td></tr></table>	구분	1회 기준	사용 시간	대관료	비고	다목적실 교육장	오전	09:00 ~ 12:00	50,000		오후	14:00 ~ 17:00	50,000		전시실	1일	09:00 ~ 18:00	50,000	
구분	1회 기준	사용 시간	대관료	비고																
다목적실 교육장	오전	09:00 ~ 12:00	50,000																	
	오후	14:00 ~ 17:00	50,000																	
전시실	1일	09:00 ~ 18:00	50,000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순천시 업사이클센터는 다음 각 호의 해당되지 않은 날은 매일 운영한다.

1. 일요일
2. 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현업부서 지정에 따른 토요일 근무자(2명) 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발췌)

-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계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6급	11,401	3,800	91,648
	7급	10,299	3,433	82,786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총 비용(a-b)	-41,692	-5,408	-9,071	-9,071	-9,071	-9,071
세입(a)						
세출(b)	41,692	5,408	9,071	9,071	9,071	9,071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 계	41,692	5,408	9,071	9,071	9,071	9,071
국 비	0					
도 비	0					
시 비	41,692	5,408	9,071	9,071	9,071	9,071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1개 단위사업
- 사업기간 : 2019년(2019.6월~12월)
- 산 출 액(2019년) : 5,408천원
- 산출근거(2019년)
 - 토요일 휴일수당(6급) : $91,648\text{원} \times 1\text{명} \times 31\text{일} = 2,841\text{천원}$
 - 토요일 휴일수당(7급) : $82,786\text{원} \times 1\text{명} \times 31\text{일} = 2,567\text{천원}$

6. 협의사항 : 업사이클센터 개관 이후 토요일 근무로 현업부서 지정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생태환경센터 청소자원과 과장 유형익(☎ 749-6207)
- 업사이클팀장 박애란(☎ 749-3025)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961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9. 5. 2.

1. 개정이유

-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의 침출수 배출 허용 기준 이하 처리 지원
- 침출수로 인한 민원 예방을 위해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에서 처리 및 부과·징수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내 침출수처리시설에서 처리 근거 마련(제5조제3호)
-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에서 처리비용 부과·징수 근거 마련(제11조의2)

3. 개정조례안 : 별도첨부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8.12.07. ~ 12. 27)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12.05.(여성가족과-4255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8.10.11.(자원순환과-26248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8.11.26.(전략기획과-1343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8.12.05.(순천시 공고 제2018-1917호)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 본문 중에 “폐기물의”를 “폐기물 등의”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BTO)에서 반입된 침출수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침출수 처리수수료 징수 등) ①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립장 내 침출수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하는 침출수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 침출수를 매립장 내에서 계량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반입자에게 부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반입신청에 따른 반입허용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반입허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적으로 반입하는 자는 월 단위로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수수료(제11조의2 관련)

□ 부과대상 항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른 매립시설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생물 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페놀류 등 오염물질

□ 수수료 산정기준

- 침출수 처리수수료는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침출수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1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른 매립시설 침출수의 배출허용기준(나 지역 적용)을 초과한 경우 부과대상 항목 별로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 침출수 1킬로그램당 처리수수료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본처리비(유기물질, 부유물질), 제45조제1항에 따른 초과 처리비를 준용하여 산정하되, 같은 조 제5항 관련 별표 14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부과대상 항목 중에 생물 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둘 중 큰 값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용한다.
- 침출수의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침출수에 대해서는 최소 30일 마다 2회 이상씩 불시에 채수 후 검사를 의뢰한 후 평균값으로 배출허용기준초과율($(\text{배출농도} - \text{배출허용기준농도}) \div \text{배출허용기준농도} \times 100$)을 적용해 당해 기간의 침출수 처리수수료를 산정한다.

□ 수수료 산정내역

- 기본처리비 : 부과대상 항목별 기준내 처리량 x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x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x 지역별 부과계수(나 지역)
- 초과처리비 : 부과대상 항목별 기준초과 처리량 x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x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x 지역별 부과계수(나 지역)
- 반입된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반입대상 폐기물 등) ① (생략)	제5조(반입대상 폐기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u>폐기물의</u>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u>폐기물 등의</u>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u> <u>사업(BTO)에서 반입된 침출수</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11조의2(<u>침출수 처리수수료 징수 등</u>)
	① <u>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립장 내</u> <u>침출수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하는 침</u> <u>출수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순천시 생</u> <u>활폐기물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수수료</u> <u>(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부과·징수</u> <u>한다.</u>
	② <u>제1항의 수수료는 매립장에 반입된</u> <u>침출수를 매립장 내에서 계량하고 수</u> <u>질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반입자에게</u> <u>부과한다.</u>
	③ <u>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반입신청에</u> <u>따른 반입허용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납</u> <u>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u> <u>을 경우 시장은 반입허용을 취소하여</u> <u>야 한다. 다만, 상시적으로 반입하는 자</u> <u>는 월 단위로 처리수수료를 납부하게</u> <u>할 수 있다.</u>